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 88호 2015. 9. 7(월)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5-1082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 남원시 공고 제 2015-1083호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7
- 남원시공고 제2015-1076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24
- 남원시공고 제2015-1079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37
- 남원시공고 제2015-1078호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2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공고 제 2015-1082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9월 0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 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7),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남원시립도서관 담당자 이지선(전화 : 620-89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9.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1. 제정이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제3조)
- 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독서문화진흥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09.04. ~ 2015.09.24.(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남원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진흥)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행사를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 2.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3.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독서교육, 학술행사, 강연회, 경진대회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견 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 법 예 고

남원시 공고 제 2015-1083호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9월 0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시민들에게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 선정 및 위치에 관한 사항
- 나.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 다.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7),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남원시립도서관 담당자 이지선(전화 : 620-89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1. 제정이유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시민들에게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발달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 선정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나.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다.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09.04. ~ 2015.09.24.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원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또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구축사업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 및 위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 지역
- 2. 문화소외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 3.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 4. 주민의 독서의지가 강하며 연령별 수혜주민이 많고 독서 열기가 높은 지역
- 5. 지방자치 운영 기관 중 다중이용 장소 및 특색있는 시설
- 6. 자체 운영비 및 운영요원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 7.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회가 조직되어있는 지역 또는 자원봉사회 조직이 가능한 지역

②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운영자는 설치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관련계획서의 타당성을 조사·선정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

②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 및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 마련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

③ 작은도서관은 1년에 2번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 및 폐관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도서관 자료를 공공에 제공해야 하는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작은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등록을 받았을 경우
7. 그 밖에 독서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정하여 자료구입비, 인건비, 그 밖에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초·중등 교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제11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각 기관 당 도서관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요일은 휴관하며, 위원장은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4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10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입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새로운 작은도서관 정책

을 발굴한다.

⑤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 심의·조정한다.

1. 작은도서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예산 운영 및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9. 자료의 이관·교환·제작·폐기에 관한 사항
10. 다른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1. 작은도서관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2. 작은도서관 운영 재원 및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자료의 기증)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정확히 기록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도 서 관 시 설 명 세 서(제7조 관련)			
① 명 칭			
② 도서관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공공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작은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도서관 <input type="checkbox"/> 병원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교도소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전문도서관	③ 이용자수 (명)	
시 설	④ 부 지	면 적	제곱미터
	⑤ 건 물	면 적	제곱미터
		용도별면적	
	⑥ 열 램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별 좌 석	
	⑦ 기계·기구		
자 료	⑧ 도 서	권	
	⑨ 연속간행물	종	
	⑩ 비도서 자료	종	
	⑪ 그 밖의 자료		
⑫ 직 원	전체인원 명	사서직원 명	일반직원 명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제7조 관련)		처리기간	
		즉시	
①도서관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공공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작은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도서관 <input type="checkbox"/> 병원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교도소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전문도서관	
② 등록 번호		제 호	③ 등록연월일
설 립 자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 :)	
⑦ 명 칭			
⑧ 소 재 지		(전화 :)	
⑨ 사 유			
<p>「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 구비서류 :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수수료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없 음

[별지 제5호서식](제7조 관련)

제 호

도 서 관 등 록 증

- 1. 도서관 명칭 :
- 2. 소재지 :
- 3. 성명 : (생년월일 :)
- 4.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 5. 도서관의 종류 :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견 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공고 제2015-1076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남원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객 유치지원(안 제2장)
- 나.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안 제3장)
- 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안 제4장)
- 라.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안 제5장)

3. 참고사항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162)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063-620-6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반 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 과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에 따른 관광펜션,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

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 단체 등을 말한다.

8.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일반 숙박시설 또는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호텔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1일 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내일로 이용객 인센티브 지원”이란 코레일 전북본부(기타)에서 발행한 “내일로 티켓” 이용 관광객들이 시 관내 지정된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란 시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에 충족 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2.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이란 코레일을 이용한 관광객이 시를 방문할 때 시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충족 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물의 제작사업
- 3.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4.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5. 관광편의시설 등 설치
- 6. 그 밖에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

제5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 2. 여행사가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 3. 그 밖에 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을 한 관광사업자, 관광업체로서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원
- 2.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 3. 단체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원 지원

4.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전에 시 관광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6조(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와 홍보책자에 해당 업소소개 및 관광 홍보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숙박업소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7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경비
2.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경비
3. 코레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
4.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전에 시 관광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 시장은 전라북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내일로 티켓 숙박 지원) 시장은 “내일로 티켓” 이용관광객에게 1명 1박당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 등의 적절한 안내 및 자료제공
2.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보 보완 및 수집
3. 관광객의 편의제공

- 4. 시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업무

제13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한다.

③ 시의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14조(관광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①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안내원의 선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선발하여 활용한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
- 2. 관광정보 자료 수집·작성·관리
- 3. 관광홍보물 등 배포
- 4. 시 관광 관련 관광객 의견수렴 및 관리
- 5.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 홍보
- 6.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
- 7. 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8.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안내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관광안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안내소 지원 등) ① 시장은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
3. 남원권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

②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제16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계획)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9조(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라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관내 문화재·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5장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

제20조(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의 활용계획) 시장은 지리산 둘레길 탐방객들의 관광안내를 위하여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이하 “이야기꾼”이라 한다) 양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야기꾼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이야기꾼의 선발 및 활용) 시장은 지리산 둘레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

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야기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이야기꾼의 직무) 이야기꾼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레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와 식물 이야기, 주변의 역사와 지역 문화 안내 및 해설
2. 둘레길 탐방 관광객의 안전한 도보여행 지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23조(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이야기꾼이 둘레길 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이야기꾼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① 시장은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공고 제2015-1079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안 제2조)
- 다.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안 제5조)
- 라.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대상 사업(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①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조건)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관광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일정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① 시장은 관광객이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알선한 여행사에 별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체류 일정으로 시 관광자원을 소재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외 현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 경우에는 전체 홍보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원지역 모객 상품 광고 문안이 전체 광고 문안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른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한다.

제6조(중·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 조례 제2조제9호의 중·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은 2명 1실 기준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8조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숙박시설(여관·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2. 객실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제8조(지원규모) 조례 제8조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센티브 지원기준(제2조 관련)

분 야		지 원 기 준	지 원 액		비 고
			1박 숙박 시 1명당 지원액	2박 이상 숙박 시 1명당 지원액	
숙	외국인 (일반인관광객)	20명 이상, 1일 1숙박, 1식 이상	10,000원	20,000원 (3박 25,000원)	
	외국인 (수학여행단체)	30명 이상, 1일 1숙박, 1식 이상	5,000원	7,000원	
박	내국인 (일반인관광객)	20명 이상, 1일 1숙박, 1식 1유료관광지 이상	10,000원	20,000원 (3박 25,000원)	
	내일로 티켓 이용 객	전북발권(기타), 관내숙박 기준	10,000원	20,000원	
<p>※ 이 외 여행사의 특별상품운영은 사전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p>					
당 일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	버스1대당(20명 이상) 1식, 1유료관광지 이상	버스 1대당 40만원		
<p>※ 운행구간과, 특별상품 운영(정기열차 s-train 등)은 1일 임차료 현행지급 기준에 맞춰 변동 지급 할 수 있다.</p>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단체관광 유치 사전계획서(제3조 관련)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표자	
주소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		여행 안내자 :

 관광일정

구분	관광일시	방문객수		상품명 (주요관광지)	인솔자		비고 (숙박지)
		내국인	외국인		성명	연락처	
숙박관광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남원시 관광을 실시하고자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 . .

신청자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단체관광 일정표

시 간 계 획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분		
첫 째 날				
둘 째 날				
셋 째 날				

[별지 제3호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제3조 관련)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Fax):		

관광객 유치실적

구분	관광일시	관광인원			방문 관광지	이용버스 대 수	비고
		계	남	여			
숙박관광							

지원금 신청액 :

- 산출내역 : 관광객 명 / 버스 대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1.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단체관광객 유치 숙박확인서 1부(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4. 단체관광객 명단 1부
 5. 관광지 방문 증명 사진대장 1부
 6. 여행업 등록증 통장 사본 1부
 7. 유료관광지(식당이용 계산서, 사진 등) 입장권

20 . . .

신청자: 업 체 명 :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숙박확인서(제3조 관련)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주소			
여행사등록번호		등록일	
전화번호		F A X	

숙박내용

숙박기간	국적	숙박인원(명)			비고
		계	관광객	여행사관계자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사실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민·형사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확인자 업소명 :
 주소 :
 대표자 :
 연락처 :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관광지 방문 중빙 사진 대장(제3조 관련)

관광지명 :	방문일 :
<p>사진 1</p>	
관광지명 :	방문일 :
<p>사진 2</p>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제5조 관련)

개발업체 일반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 체 주 소	(〇)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업 태	
거래은행		계좌번호	

상품개발 현황

[단위 : 명,대]

관 광 상품명	상품종류 (당일/숙박)	관 광 기간	관 광코 스	남원체류일정		모객 국가	모객 인원	상품 판매 가격	비 고
				체류일자 (시간)	방문지역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관광상품 세부계획서 1부.
2. 관광상품 홍보물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신청서(제5조 관련)

 개발업체 일반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체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업 태	
거래은행		계좌번호	

 상품개발 현황

[단위 : 명, 대]

개발일자	상품종류 (숙박)	주요코스	모객인원	상품판매가격	비고

 홍보현황

홍보기간	종류	홍보매체명	홍보금액	홍보내용	비고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관광상품 개발계획서 1부.
2. 홍보의뢰 계약서(홍보물견적서 및 세금계산서포함) 1부
3. 홍보물 또는 홍보내용 캡처물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1부.
5. 지역개발채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15-1078호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규정이 2015년 5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규정(안 제1조)
- 나. 남원시 관광협의회 정의(안 제2조)
- 다. 남원시 관광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 해촉 등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라. 남원시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안 제12 및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남원시 지역관광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원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3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위원의 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테마관광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절차) ① 협의회위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